

의안번호	2203877
의 퇴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4. 11. 1.
추계번호	24D368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지역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¹⁾의 선박을 이용하는 섬 주민 차량에 대하여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3,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1억 9,500만원(연평균 2억 3,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웅진군	151	154	157	161	164	789	158
울릉군	78	79	81	83	84	406	81
섬 주민 차량의 화물선 이용시 운임 지원 (안 제24조제7항)	230	234	239	244	249	1,195	239

주. 여객선 운임신고제와 달리 내항화물선은 선사별 자율운임에 따라 객관적인 화물수송 및 운임수입 실적 등의 통계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행정안전부 및 울릉군 제출자료인 일부 선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도민 차량의 화물선 이용 건수, 운임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자료: 행정안전부 및 울릉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 내용	비고
1	안 제12조의2 (농어촌유학 지원)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음(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유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3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농어촌유학 지원 및 학교 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제5항)	재량규정

1) 「해운법」 제23조(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화물운송사업: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2	안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제12항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산업교육기관 등을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으로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재량규정
3	안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제3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노후화된 빈집에 대하여 시장·군수 등이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에 대한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자진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4	안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제7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내항여객선 및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을 이용하는 섬 주민 및 섬 주민 차량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7항) (현행) 내항여객선 → (개정안) 내항여객선 및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의2(농어촌유학 지원) 신설	×	농어촌유학의 경우 유학센터형, 가족체류형, 농가홈스테이형으로 구분되며 2024년도 기준(강원·전남·전북) 유학센터 거주보다 가족체류형이 대부분(91%)이고, 농어촌유학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과 관련한 계획 수립 전이므로 센터 설립 규모 및 운영 비용 등을 추정하기가 곤란함
2	안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제12항 신설	-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 우선 선정은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지침을 개정하여 '2025년 모집 공고'를 완료함(2024.9.9.)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예상되지 않음
3	안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제3항 신설	×	현시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노후화된 주택 중 철거가 필요한 주택의 수를 예측하기가 곤란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노후화된 주택개선을 위한 철거비용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철거 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동당 철거비 1~3백만원 내외를 지원중임 ·(전라북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빈집 리모델링 비용(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

			전성 확보, 5년간 무상임대해주는 사업으로 2021년에 75동 지원 · (경상남도) 더불어나눔주택사업은 빈집 리모델링 비용 (1,360만원)을 지원하여 일정기간(최대 4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청년 및 저소득층에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2021년에 13동 지원
4	안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제7항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인구감소지역 내의 도서지역 중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승용 및 승합차의 화물선 이용 비중이 높은 경상북도 울릉군의 섬 주민 차량의 화물선 이용시의 운임 지원 비용을 추계 대상으로 함
- 여객선 운임신고제와 달리 내항화물선은 부정기항로로 운항중이며, 선사별 자율운임에 따라 객관적인 화물수송 및 운임수입 실적 등의 통계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행정안전부 및 울릉군 제출자료인 일부 선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화물선을 이용하는 승용 및 승합차 이용 건수는 추계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화물선을 이용하는 승용 및 승합차의 종류를 예상하기가 곤란하므로,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내역사업’에서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 차량 운임의 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 비율은 평균 운임의 30%로 가정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²⁾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법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10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CPI)	2.5	2.1	2.0	2.0	2.0	2.0	2.0

안 심사 및 예산 심의 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도민 차량의 화물선 이용시 운임비 지원

- 본 추계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의 도서지역이 포함된 지역³⁾ 중 카페리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2023년부터 대형 쾌속여객선으로 차량을 운송중이나 화물선 이용 비중이 높은 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섬 주민의 승용 및 승합차가 화물선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경우의 운임 지원 비용을 추계함
 - 개정안에서는 섬 주민 보유 차량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섬 주민 보유 차량과 섬 주민외의 외지인 보유 차량을 구분하기 곤란하므로 화물선을 이용한 차량 이용 실적 중, 건설장비 및 수산물 운송 등을 위해 이용중인 화물자동차⁴⁾는 추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승용 및 승합차만을 추계 대상으로 함
 - 참고로 현재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제44조(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 및 요금지원)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에 따라 ‘내항여객선 운임보조(6136-301)’⁵⁾ 세부사업 중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내역사업을 통해 아래와 같이 지원중

3) 인구감소지역 중 도서지역이 포함된 지역

구분	인구감소지역		
인천	강화군, 옹진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남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부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경북	울릉군	경남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4)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건설장비 및 수산물 운송 등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화물자동차는 섬 주민외의 외지인 보유 차량으로 추정됨. 참고로 인구감소지역 내의 도서지역 중 화물선을 이용한 연간 화물자동차 운송 건수는 3,167건(2023년도 기준), 평균 운임은 296,240원임

5) 2023년, 2024년, 2025년도(안) 예산: 각 13,176백만원

- 여객운임 지원: 10,881백만원(2024년), 도서민을 대상으로 내항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중⁶⁾
- 차량운임 지원: 2,295백만원(2024년), 도서민 차량을 대상으로 내항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중⁷⁾

□ 행정안전부 및 울릉군 제출자료인 옹진군과 울릉군의 화물선을 이용하는 승용 및 승합차의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옹진군 및 울릉군의 화물선을 이용하는 승용 및 승합차 현황(2023년 기준)

구분	평균 운임 (A)	연간 화물선 이용 건수 (B)	차량 운송 비용 (C=A×B)	차량 운송 비용의 30% (D=C×30%)
옹진군	264,500원	1,790대	473,455,000원	142,036,500원
울릉군	249,000원	980대	242,020,000원	72,606,000원

주: 행정안전부 및 울릉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지역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을 이용하는 섬 주민 차량에 대한 운임을 지원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3,0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11억 9,500만원으로 추계됨
- 화물선을 이용하는 승용 및 승합차 이용 건수는 추계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화물선을 이용하는 승용 및 승합차의 종류를 예상하기가 곤란하므로 지원 비율은 평균 운임의 30%로 가정
 - 평균 운임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6)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를 정률로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7)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 운임을 정률로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경형: 50%, 소형승용차:30%,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20%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용진군	151	154	157	161	164	789
울릉군	78	79	81	83	84	406
합 계	230	234	239	244	249	1,195

주. 여객선 운임신고제와 달리 내항화물선은 선사별 자율운임에 따라 객관적인 화물수송 및 운임수입 실적 등의 통계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행정안전부 및 울릉군 제출자료인 일부 선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도민 차량의 화물선 이용 건수, 운임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자료: 행정안전부 및 울릉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행정안전부 및 울릉군 제출자료인 일부 선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도민 차량의 화물선 이용 건수, 화물선 운임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